



육상처리 가능한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폐기물 해양투기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1996년 채택된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 '96의 정서에 멕시코가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요건인 26개국이 충족되어 금년 3월24일 발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 따르면, 런던협약 '96의정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인지에 대한 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투기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폐기물의 해양투기시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해양투기를 허가하고 해양투기 후에도 배출해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배출업자는 투기하는 폐기물이 투기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96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을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제적인 투기억제 요구가 강화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나 해양수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국내법 정비 및 비준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96의정서에 대비하여 지난 2월2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품목 축소(14종 → 9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처리기준 등을 강화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중에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육상처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기해역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관리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투기량을 매년 10%씩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투기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식년제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4월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 135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해양투기 하는 처리폐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부터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로 2004년 3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하였다. 그후 투기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성 물질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해 7월 처리폐수에 대한 일제점검시 많은업체에서 함수율(95%이상)이 미달되어 시설을 개선하는 중에 있으나 일부업체에서 시설개선은 않고 고형물이 많이 포함된 고농도의 처리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량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처리폐수의 고형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함수율 기준(90%이상)이 미달하는 업체는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처리기준을 검사하고, 불법 폐기물 및 이물질 함유여부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